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1. 6. 26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2001. 7. 2

다. 상정일자 : 제109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3차 본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동두천시규제개혁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제2단계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계획 심의결과” 개선대상 사무로 통보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정지사항이 자의적이고 규제목적에 부적합한 요건이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불명확한 조항인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 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때”를 “보호자인 통장이 자격을 상실하였을때”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현 조례중 불명확한 조항을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반대토론 : 형남선의원)

동두천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정지사항이 자의적이고 규제목적에 부적합하다는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통보로 제7조 제1항 제1호인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를 「보호자인 통장이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중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목적에 비추어 통장이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지급정지는 물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으

므로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장학금 지급정지에 관한 위 조례 제7조에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각 호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행위의 범위등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함.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심 사 결 과

“ 부 결 ”